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4호**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은 이미 2010년 7월 22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공표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지수평(支树平)  
2011년 9월 13일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식품의 안전과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과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과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실시조례,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등 법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수출입식품의 검사, 검역,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수출입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과일, 식용생물의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중국 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립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국가질검총국의 일괄 지도하에서 법에 의거 수출입식품의 안전감독관리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을 생산한 해외기업의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한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체도 서류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수출식품의 생산기업에 대한 서류 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의 원료 재배지, 양식장에 대한 서류관리도 실시한다.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 및 표본추출을 하며 수출입식품을 분류 관리하며 수출입식품의 생산관리자에 대한 신용도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수출입식품의 생산관리자는 법에 따라 생산관리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식품안전을 보증하며 신용을 지킨다. 또한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6조**

검사검역기구에서 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하 '검사검역인원'이라 함)은 반드시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장 식품수입**

제7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의 법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입식품 안전감독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검토성 심사를 진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중국 법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사항, 중국과 해외의 전염병발생상황과 유독성,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분석결과를 앞 조항에서 규정한 평가 및 심사결과를 결합하여 상응하는 검사검역 요구사항을 확정한다.

**제8조**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과 관련 검사검역요구사항에 부합해야만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관련 식품의 업계표준 가운데 강제집행에 관한 표준에 근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처음으로 수입하여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발급한 허가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9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기업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작업은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반드시 국가질검총국에 서류를 등록해야만 한다. 서류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서류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 서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진실여부에 책임을 진다.

서류 등록된 명단은 총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만 한다.

#### 제10조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동식물 검역심사수속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취득해야 비로소 수입할 수 있다.

#### 제11조

동식물 전염병 또는 유독, 유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식품의 수입은 지정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 지정된 항구의 조건과 리스트는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 제12조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고 세관 신고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한다.

- (1) 계약서, 영수증, 화물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명서류
- (2) 관련 승인문서
- (3) 법 규정, 쌍방간 협정, 의정서, 기타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만 하는 수출국(지역) 공식 검역(위생)증서
- (4) 최초 수입하는 사전포장식품은 수입식품 라벨본과 해당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5) 최초로 수입하여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식품은 본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허가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6) 수입식품이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타 증서 또는 증명서류

검역신고를 할 때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은 수입하는 식품의 품명, 브랜드, 원산지(지역), 규격, 수량/중량, 총 가치, 생산일자(로트번호),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내용을 일일이 신고한다.

#### 제13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검역신고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검역신고를 수리한다.

제14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운송도구는 반드시 안전위생요구사항에 부합해야만 한다.

#### 제15조

수입하는 사전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중문설명서는 반드시 중국 법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만 한다.

####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라벨의 내용이 법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양식의 형식, 라벨에 명기된 내용의 부합여부에 대해 검사한다.

수입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상이나 증서 획득, 원산지, 기타 내용 등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 또는 특수한 성분이 함유되었음이 강조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

수입식품은 검사검역 합격증명을 획득하기 전까지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장소에 보관해야만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허락 없이 회사나 개인이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 제18조

수입식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가 합격증명을 발급하여 판매와 사용을 허가한다.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합격증명에는 반드시 화물품명, 브랜드, 원산지(지역),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로트번호)가 일일이 명시되어야 하고 브랜드나 규격이 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표기해야만 한다.

수입식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증명을 발급한다. 안전, 건강, 환경 보호 관련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에게 식품의 소각을 명령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입업체가 반송수속을 진행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 기술적 처리를 진행하여 재검사 후 합격해야 비로소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 제19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대해 서류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서류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한다.

- (1) 작성이 완료된 수입업체 서류 등록 신청서

- (2) 영업허가증, 조직코드인증서(Organisation Code Certificate),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대외무역 경영자 서류등재표 등의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의 검증을 받는다.
- (3) 기업품질안전 관리제도
- (4)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직의 설립, 부처의 기능, 직무내용
- (5) 관리할 식품종류와 저장장소
- (6) 2년 내 식품수입, 가공, 판매에 종사한 적이 있는 경우 관련 설명을 제출해야 함(식품종류, 수량)
- (7) 자체적으로 검역신고를 한 경우는 자체 검역을 한 조직의 서류등기 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의 검증을 받는다.

검사검역기구는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대조한 후 서류 등록을 허가한다.

#### 제20조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식품수입/판매기록제를 수립하여 수입한 식품의 위생증서번호, 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자(로트번호), 보존기한, 수출업체와 구매자 명칭 및 연락처, 거래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에 따라 기록한다.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2년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검사검역기구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수입업자의 수입 및 판매기록에 대해 검사를 해야만 한다.

#### 제2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의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연간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수입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위험 분석을 기초로 관련 수입식품의 검사검역과 감독 조치를 조정한다.

#### 제22조

수입식품의 원료를 전부 가공한 뒤 재수출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목적국(지역)의 기술규정에서의 강제적 요구사항 또는 무역계약 요구사항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 제23조

검사검역기구가 수입식품이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생산한 해외기업과 수출업체, 중국 수입업체, 검역신고인, 대리인을 불량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불법행위가 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 제3장 식품수출

#### 제24조

수출식품 생산관리자는 해당 수출식품이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서 상의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보증해야만 한다.

수출국(지역)에 관련 표준이 없고 계약서 상에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수출식품이 중국식품 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해야만 한다.

#### 제25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완비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야만 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은 원료, 부재료, 식품첨가제, 포장재용기 등의 입하검사기록제를 수립해야만 한다.

수입식품생산기업은 생산기록파일을 만들어 식품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정황을 사실에 따라 기록해야만 한다.

수입식품생산기업은 출고검사기록제를 수립하여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에 합격해야 비로소 검역신고를 할 수 있다.

상술한 기록은 반드시 진실해야만 하고 보존기한은 2년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 제2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해 서류등록제를 실시하고 서류등록작업은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제27조

검사검역기구는 관할 구역 내에 수출식품생산기업의 품질안전관리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감

독관리의 책임을 진다.

#### 제28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의 원료 재배지와 양식장에 대한 서류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 식품의 원료 재배지와 양식장은 반드시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서류 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서류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원료 품종 리스트(이하 '리스트'라 함)와 서류 등록 조건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수출식품의 원료가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서류 등록된 재배지와 양식장에서 원료를 조달해야만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서류 등록된 원료의 재배지와 양식장 리스트를 일괄 공표한다.

#### 제29조

서류 등록된 재배지와 양식장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는 서류 등록된 재배지와 양식장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서류 등록 요구사항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즉시 소재지 정부의 관련 주무부처와 수출식품생산기업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한다.

생산기업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는 반드시 서류 등록된 재배지와 양식장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재배지와 양식장이 제공한 원료의 품질안전과 위생상황을 즉시 통보한다.

#### 제30조

재배지와 양식장은 반드시 원료의 생산기록제를 수립하고 진실하게 생산내용을 기록하며 기록의 보존기한은 2년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서류 등록된 재배지와 양식장은 수입국(지역)의 식품안전표준과 중국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농업화학물을 사용하고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한다. 서류 등록된 재배지와 양식장은 생산한 모든 원료에 대해 수입식품 가공원료 물품공급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 제3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며 연간 수출식품 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수출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수출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위험분석을 기초로 관련 수출식품의 검사검역과 감독 조치를 조정한다.

#### 제32조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계약, 영수증, 화물명세서, 출고합격 증명, 수출식품 가공원료 물품공급 증명서류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승인문서를 구비하여 수출식품생산기업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한다. 검역신고를 할 때 수출한 식품의 품명,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를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 제33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식품의 분류관리 요구사항, 해당 지역 수출식품의 품종, 과거 수출 정황, 안전기록, 수입국(지역)의 요구사항 등의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위험분석을 통해 해당 관할 구역의 수출식품의 표본추출검사방안을 제정한다.

검사검역기구는 표본추출검사방안, 관련 작업규정, 관련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수출식품에 대한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한다.

쌍방의 협정이 있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한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한다.

#### 제34조

수출식품이 수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세관 증명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증서를 발급한다. 수출식품의 수입국(지역)에서 증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질검총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검사검역기구가 비로소 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수출식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증명을 발급한다. 법에 의거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실시해야 하며 합격해야 비로소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법에 의거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적 처리 이후에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 수출을 금한다.

#### 제35조

수출식품의 포장과 운송방식은 안전위생 요구사항에 부합해야만 하며 검사검역에 합격해야만 한다.

#### 제36조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선적한 컨테이너, 배, 비행기, 차량 등 운송 도구에 대해 운송인, 선적회사, 대리인은 반드시 선적 전에 검사검역기구에 청결, 위생, 냉장, 견고함 등 적재능력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선적을 금한다.

#### 제37조

수출식품의 생산기업은 운송포장에 반드시 생산기업명, 서류등록번호, 제품품명, 생산로트번호, 생산일자를 표기해야만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반드시 발급한 증명서에 상술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국(지역) 또는 계약서에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추적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검사검역국의 동의를 얻어 표기 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검사검역표시가 필요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한다.

#### 제38조

수출식품이 생산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 결과, 항구로 수송하기 위한 수출 요구사항에 부합한 경우, 생산지 검사검역기구는 선적, 밀봉 표기, 기타 방식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9조

수출식품이 생산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 결과, 수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항구 검사검역기구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항구에서의 표본 조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정보를 생산지 검사검역기구에 즉각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생산지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원인에 따라 상응하는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0조

검사검역기구가 법정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식품을 발견한 경우, 생산관리자를 불량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불법행위를 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 제4장 위험예고 및 관련 조치

제4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식품에 대한 위험예고제를 실시한다.

수출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 또는 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중국과 해외에서 식품안전사건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출입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반드시 즉각 위험예고와 통제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제42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반드시 수출입식품안전 정보수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아래의 정보가 포함된다.

- (1) 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식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여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 (2) 업계 협회와 소비자를 반영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 (3) 국제조직, 해외정부가관이 발표한 식품안전정보, 위험예고정보, 해외업계협회 등 조직과 소비자를 반영한 수입안전정보
- (4) 기타 식품안전정보

#### 제43조

검사검역기구는 승인하고 정리한 식품안전정보를 규정된 요구사항과 절차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한다.

#### 제44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된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위험정보의 등급을 확정한다.

#### 제45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식품안전위험정보의 등급에 따라 위험예고통보를 발표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상황에 따라 위험예고통지를 발표할 수 있으며 아래의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조건부로 수출입을 제한함. 엄격한 감시, 조사, 리콜 명령 등이 포함됨
- (2) 수출입을 금지함. 즉각 소각 또는 반송 처리함
- (3) 수출입식품안전 응급처리대책을 가동함

검사검역기구는 위험예고와 통제조치를 조직적으로 실시할 책임이 있다.

#### 제46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제적 통용방법을 참고하여 불확정한 위험에 대해 직접 위험예고통보 또는 위험예고통지를 발표할 수 있으며 본 방법의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

다. 또한 즉각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또는 보충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7조

수출입식품의 안전위험요소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을 경우 즉각 위험예고통보, 위험예고통지, 통제조치를 해제한다.

#### 제48조

수입식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이미 위협하였거나 앞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가 반드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만 한다.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는 대중에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을 통지하며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식품 리콜 정황을 기록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보고를 받은 후 조직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품의 영향범위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리콜 명령통지서를 발급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해당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은 위험예고통보 또는 위험예고통지를 발표할 수 있으며 본 방법의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와 기타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9조

수출한 식품에 안전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이미 위협하였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을 수출한 생산관리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각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 제50조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의거 수출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 (1) 생산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 (2) 관련 계약서/영수증/장부/기타관련자료의 열람, 복제, 압수수색, 압류
- (3) 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불법 사용한 원료, 부재료, 첨가제, 농업첨가물, 불법생산에 사용된 도구와 설비를 압수수색 또는 압류
- (4)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중대한 안전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관리 장소의 압수수색

#### 제51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한 통제조치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지방정부와 관련부처에 통보해야만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와 채택한 통제조치를 관련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제5장 법적책임

#### 제52조

본 방법 제17조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감독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53조

검사결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54조

수입업체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식품수입/판매기록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 (2) 작성된 식품 수입/판매기록 상의 수입식품의 위생증거번호, 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자(로트번호), 보존기간, 수출업체, 구매자 명칭, 연락처, 교부일자 등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 (3) 작성된 수입 식품, 판매기록의 보존기한이 2년보다 적은 경우

#### 제55조

수입식품의 원료 재배지, 양식장이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수입식품의 원료를 재배/양식하는 과정 중 불법으로 농업화학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2) 관련 기록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존기한이 2년 보다 적은 경우
- 생산기업이 수출한 수출식품에 사용한 원료가 규정대로 서류 등록된 장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 앞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가 식품안전법 제89조,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검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독과 표본추출검사에 합격하지 않았음에도 마음대로 수출한 경우
- (2)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과 표본조사를 받고 이미 검사검역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식품을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제57조  
수출입식품의 생산관리자, 검사검역기구, 검사검역인원이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장 부칙

제58조  
수출입식품 생산관리자에는 수출입식품의 생산기업, 수출입업체, 대리업체가 포함된다.

제59조  
세관의 특수 감독 구역을 오가는 식품, 국경에서 소액으로 상호간 통상 무역하는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감독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특급우편, 우편, 여행객 휴대 등의 방식으로 수출입되는 식품의 경우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만 한다.

제61조  
샘플, 선물, 증정품, 전시품 등 비무역적 성격의 식품을 수출입하거나 면세, 대사관/영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식품을 수입하거나 대사관/영사관, 중국 기업 입주인원 등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대만에 제공되는 식품의 경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63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64조 본 방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